

●대구전파관리소공고 제2026-31호

전파법을 위반한 시설자에 대하여 아래의 처분을 하고자 행정처분서를 우편(배달증명)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대구전파관리소장

전파법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처분통지 송달불능 내역

1. 공고 대상자 및 내역

순번	시설자명	주 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예정처분
1	보O이엔씨	영덕군 영덕읍	94-2020-61-0005291	보OO덕500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2			94-2020-61-0005292	보OO덕501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3			94-2020-61-0005293	보OO덕502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4	주식회사 메OO어스	안동시 동문동	94-2025-61-0001971	메이OO동501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5			94-2025-61-0001972	메이OO동502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6			94-2025-61-0001973	메이OO동503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7			94-2025-61-0001974	메이OO동504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8			94-2025-61-0001975	메이OO동505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9			94-2025-61-0001976	메이OO동506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10	주식회사 유 OO포항	포항시 남구	94-2022-61-0004166	메가OO항508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11			94-2022-61-0004167	메가OO항509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12			94-2022-61-0004168	메가OO항510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13			94-2022-61-0004169	메가OO항511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14	한O호	대구시 북구	94-2025-61-0001148	정OO전501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15			94-2025-61-0001149	정OO전502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16			94-2025-61-0001150	정OO전503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17			94-2025-61-0001151	정OO전504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2. 근거법령: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3. 처분일자: 2026. 9. 21.

4. 행정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가. 행정심판 청구

-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두 기간 중에 하나라도 도래하면 심판청구할 수 없음에 유의)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10, www.simpan.go.kr, 온라인, 우편 접수 가능)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 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 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나. 행정소송의 제기

-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두 기간 중에 하나라도 도래하면 심판청구할 수 없음에 유의)에 관할 법원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참고사항

- 허가취소(신고폐지) 처분된 무선국을 별도의 행정절차 없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따라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27, 팩스 053-749-2829)